

[별지 제19호의3양식] (규칙 제32조제2항·제43조제2항·제48조제1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현수막·자동차·선박·확성장치의 표지



- 주 : 1. 표지의 바깥 지름은 현수막·선박 20cm, 자동차 14cm, 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 12cm로 하고,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, 표지를 첨부하는 선전물 등의 종류(현수막·자동차·선박·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)를 표시하여야 한다.
2. 필요한 경우 표지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선거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.